

1. 개정이유

국외 장기 이식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14호, '20.4.7.)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국외 이식자가 제출할 서류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장기 기증·이식 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의 보완 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민원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접수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 나. 국외 장기이식자가 제출해야할 서류 및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 신설 (안 제23조의2)
- 다.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일환으로 발급하고 있는 생명나눔증서의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① 법 27조의 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외 장기등 이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2. 의무기록지 등 국외 장기등 이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

한 사실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생명나눔증서(별지 제29호 서식) 발급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기관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록받을 장기등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손·팔 []발·다리 []안구 []골수 []말초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나.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기관 명칭		전화번호	
		F A X	
소재지			
대표자 성명			
관할 지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나.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검토 (지정 여부 결정)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결재 (지정서 작성)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지정서 발급
---------------	---	-----------------------	---	-------------------------------------	---	-----------------------------------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적출 · 이식할 장기등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손·팔	[]발·다리	[]안구	[]골수	[]말초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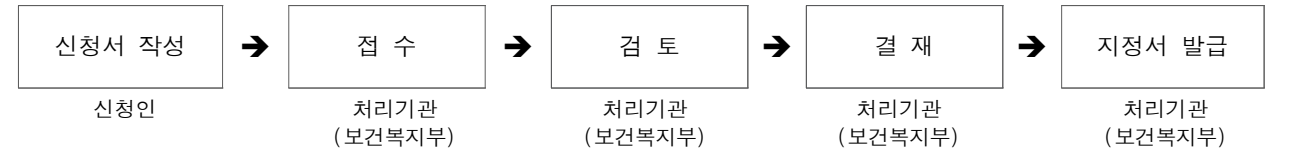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의의 이력서 및 의사 면허증 사본을 포함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이식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원인질환				
	주소	(전화번호:)			
기증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기증형태	[]뇌사 []생체			
	주소				
이식한 장기등	[]신장(좌, 우) []간장(좌엽, 우엽) []췌장(전체, 부분) []심장				
	[]폐(좌, 우) []췌도 []소장 []손(좌, 우)				
	[]팔(좌, 우) []발(좌, 우) []다리(좌, 우) []안구(좌, 우)				
	[]골수 []말초혈				
국외 이식 사항	국가	의료기관명		[]병원	
	의료기관				
	주소				
	이식일	년 월 일			
국내 치료	[]지역		[]병원		
출입국 사항	출국일	년 월 일	입국일	년 월 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 장기 이식 관리 기관 장 귀하

제출서류	1.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1부 2. 의무기록지 등 국외 장기등 이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생명나눔증서

증서번호 제 호

생 명 나눔 증 서

성명 :

생년월일 :

고인은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시고 숭고한 사랑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고인과 가족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자 :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해야 한다.

210mm × 297mm[백상지(15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u>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u> 를 확인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신 설></u> <u><신 설></u> ③ ~ ⑤ (생 략)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다음 각 호의 서류</u> ----- ----- -----. <u>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u>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u> <u>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
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③ ~ ⑤ (생략)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① (생략)

<신 설>

----- 다음 각 호의 서
류-----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의
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지정
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
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

1. ~ 4.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

제23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① 법 27조의 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외 장기등 이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u>2. 의무기록지 등 국외 장기등이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u>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생애나 늡증서(별지 제29호 서식) 발 급</u>
--	--